농림축산식품부	**보도자료**	힘내라 대한민국

2020년 8월 11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농지과 과 장 김동현(044-201-1731), 사무관 강순례(1735)/제공일: 8월 10일(총 6매)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고령농업인 농지임대 허용 등 농지 제도개선 시행
- 농지법 개정법률 8.12일 시행 -

《 주 요 내 용 》

◈ 개정된 농지법(법률 제16975호)*과 시행령**을 **8월 12일부터 시행**함

* '20.2.11일 개정·공포, 국무회의('20.8.4)→대통령재가(8.5)→관보게재(8.11)→공포(8.12)

◈ 개정된 농지법과 시행령의 **주요 내용**은 다음과 같음

○ **임대허용 사유 확대**

- 은퇴하지 않은 60세이상 농업인 소유 농지*의 임대 허용

* 5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, 농지 소유자의 거주 시·군 또는 연접한 시군에 있는 소유농지

- 농지규모화, 농산물 수급안정 등을 위한 사업으로 **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경농지**의 임대 허용

- **임신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** 농업인 소유 농지 임대 허용

○ **임차인 보호 규정 정비**

- 다년생식물재배지, 임차인이 고정식 온실·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경우 **최소 임차기간을 '3년 이상'에서 '5년 이상'으로 확대**

❑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)는 '20.2.12일 개정·공포된 「농지법」 및 「농지법 시행령」이 **'20.8.1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.**

❑ 금번 개정 농지법령은 **농촌 고령화 등 여건 변화**에 따라 노동력 부족 등에 대응하기 위해 **필요한 임대차는 허용**하고, 임차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**다년생 식물재배지 등의 최소임대차 기간은 확대**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.

❑ 개정 농지법령의 주요 내용에 대한 상세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< 임대허용 사유의 확대 >

① **은퇴하지 않은 60세 이상 농업인 소유 농지*의 임대 허용**

* 5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, 농지 소유자가 거주하는 시·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군에 있는 소유농지

- 그간 농업인 소유농지의 임대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60세 이상 농업인이어도 더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**은퇴농만 임대가 허용**되어왔다.

- '19년 기준 60세이상 농가경영주가 78%에 달하는 상황, 청년농·전업농의 농업 기반 확대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**60세 이상 농업인도 은퇴 없이 소유농지를 임대**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※ (관련 조항) 농지법 제23조제1항4호, 시행령 제24조제2항

② **농지규모화, 농산물 수급안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**에 필요한 농지의 임대허용(※ 구체적인 사업은 고시로 제정 예정)

- 이는 공동의 목적(예. 수출 규모화, 친환경 농법의 지역적 실시 등)을 지닌 농가들이 조직화하여 집단화된 농지를 활용하려는 경우, 농지소유권을 직접 확보하지 않더라도 **필요한 농지를 임대로 쉽게 이용**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.

※ (관련 조항) 농지법 제23조제1항제9호, 시행령 제24조제3항

※ **임대 허용예정 사업**(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정 예정)

- (**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**)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규모화된 사업신청자(예. 쌀 10ha 이상)에게 시설·장비·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, 친환경인증 등을 위해 **대상지 내 인근 농약 살포 등의 우려**가 없어야 하므로 연접·집단화 사업대상지 확보가 중요
- (**농산물전문생산단지**) 농산물 생산·가공시설이 갖춰진 규모화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출인증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지 내에서 자경농지 임대가 허용되면서 수출 농산물의 규모화된 생산·인증에 유용

③ **임신 중이거나, 분만 후 6개월 미만**의 농지 소유자의 **임대**와 **농작업**의 **전부를 위탁경영**하는 것을 **허용**

- 그간 농지소유자가 스스로 경작할 수 없어 임대가 허용되는 사유가 **징집·질병·취학**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다.
- 이에 따라, 임신이나 출산 직후의 농지소유자가 소유농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'질병'을 폭넓게 **해석**하여 허용해 왔다.
- 금번 농지법 시행령 개정은 '**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***'을 임대허용 사유와 전부위탁 허용 사유에 명시하는 것으로서, 주관적인 해석의 여지를 줄여 여성 농업인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
*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 : '"임산부"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으로 한다.'

※ (관련 조항) 농지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3호, 제24조제1항5호

< 임차인 보호 : 농지임대차의 최소 계약 기간 확대 >

❑ 모든 농지임대차는 **최소 계약 기간을 3년 이상**으로 해야 한다.

○ 이번 농지법령 개정은 이 중 **작물의 생육기간이 긴 다년생 작물 재배지**와 온실 등 시설물을 투자한 경우에 대해서는 **최소계약 기간을 5년 이상으로 확대**하여, 농지 임차인의 권익 보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.

○ 구체적으로 ①임차인이 농지법 시행령의 제2조제1항 각 호*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하는 농지와 ②농지의 임차인이 농작물의 재배시설로서 고정식온실 또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농지가 해당 된다.

* 제2조(농지의 범위) ①「농지법」 제2조 제1호 가목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를 말한다.

1. 목초・종묘・인삼・약초・잔디 및 조림용 묘목
2. 과수・뽕나무・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
3.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(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)

❑ 농식품부 김동현 농지과장은 **"금번 농지법령 시행으로 농지 임대차 시장이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되길 기대한다."**라고 하며,

○ "올해부터 시작된 **농지원부 일제정비와 농지이용실태조사 강화로 임대차 관리를 지속**하고, 앞으로도 농업계 내·외부을 의견을 반영한 **농지임대차 제도개선을 모색**해나가겠다."라고 전했다.

붙임 **개정 농지법 및 농지법시행령 주요 내용**

구분	법령 규정
농지법 (8.12. 시행)	○ **농지취득신청서류의 보존(제8조의2)** - (신설) 농업경영계획서 외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류의 보존 기간은 **대통령령으로 정함**(제2항) ○ **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(제23조)** - (개정)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**대통령령으로 정하는**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(제1항제4호) - (신설) **대통령령으로 정하는** 농지 규모화, 농작물 수급 안정 등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경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(제1항제9호) ○ **임대차 기간(제24조의2)** - (단서 신설) 제23조제1항 각 호(제8호는 제외한다)의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 **대통령령으로 정하는** 농지의 경우에는 5년 이상으로 하여야 함(제1항) ○ **둘 이상의 용도지역·용도지구에 걸치는 농지에 대한 전용허가 시 적용기준(제37조의2)** - (신설) 한 필지의 농지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지역·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와 그 외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가 걸치는 경우로서 해당 농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작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가 **대통령령으로 정하는** 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농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큰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기준으로 제37조제1항을 적용함

농지법 시행령 (8.12. 시행)	○ **농지취득신청서류의 보존기간(제7조의2)** - (신설) **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** 농업경영계획서 외의 농지 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류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함 ○ **농지의 위탁경영(제8조)** - (개정)법 제9조제4호에서 “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. 3.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○ **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(제24조)** - (개정) **법 제23조제1항4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”**이란 시(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·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·군에 있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(제2항) 1. 농업경영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게 된 사람 2. 농업인 - (신설) **③ 법 제23조제1항제9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규모화, 농작물 수급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한 사업”**이란 농산물(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)의 생산·가공·유통 및 수출 시설 단지를 조성·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말한다. - (개정) 제24조(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) ①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“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5.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○ **농지임대차 기간(제24조의2)** - (신설) **법 제24조의2제1항 단서에서 “다년생식물 재배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”**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. 1. 농지의 임차인이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하는 농지 2. 농지의 임차인이 농작물의 재배시설로서 고정식온실 또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농지 ○ **둘 이상의 용도지역·용도지구에 걸치는 농지에 대한 전용허가 적용기준(제44조의2)** - (신설) **법 제37조의2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”**이란 **330제곱미터**를 말함